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성평등가족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13일, 임미애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2회국회(임시회)

-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2.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7.)

-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6. 3. 24.)

-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 국회의원 임미애)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담·치료 및 법률·수사 지원 등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이에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및 제4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해바라기센터 추가 등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8조1)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해바라기센터”라 함)를 추가하고, 해당 센터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1호 및 제46조제3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 | ② -----<br>-----<br>-----<br>-----<br>----- |

- 1) 「성폭력방지법」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 ~ 10. (생략)</p> <p>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u>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u></p> <p>12. ~ 16. (생략)</p> <p>③ (생략)</p> <p>제46조(상담시설)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p> <p>12. ~ 1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6조(상담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u>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p> |

현행법 제34조제2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2)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교 및 대학, 의료기관,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 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해당 기관 내의 성범죄 사실의 은폐 또는 묵인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

-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67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2025년 12월 말 기준 아동형 7곳을 포함하여 총 41개소가 운영 중임.

< 해바라기센터 기능별 센터유형 및 개소수 >

| 구분    | 위기지원형            | 아동형                                | 통합형              |
|-------|------------------|------------------------------------|------------------|
| 연혁    | 2005년~           | 2004년~                             | 2010년~           |
| 대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
| 근무 형태 | 365일 24시간        | 09:00~18:00<br>* 18시 이후 재택당직근무 실시  | 365일 24시간        |
| 주요 업무 |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 상담·의료·법률·심리지원<br>(여경 출장으로 수사지원 가능) | 상담·의료·수사·법률·심리지원 |
| 개소수   | 18개              | 7개                                 | 16개              |

자료: 성평등가족부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 연계, 수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과정에서 성범죄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해바라기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도 신고의무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해바라기센터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 제46조제3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상담시설에 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하여 해당 센터가 법원의 보호조치(제24조3)), 피해아

동·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제37조4), 성매매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인도·연계(제38조5) 및 제38조의26)) 등을 할 수 있는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 연계,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문구 수정(법률 지원 →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23조7)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 3) 「청소년성보호법」 제24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4) 「청소년성보호법」 제37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①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청소년
  2.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5)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 6)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7) 「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바라기센터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수사지원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해바라기센터의 장도 검사에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전체적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되, “법률·수사 지원”이란 문구는 해바라기센터가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서울 및 울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현장 실무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수용의견을 제시함.

---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수행 업무 중 “법률·수사 지원”이라는 표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함.

또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상담 및 수사 지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함.

####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수정의결

##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 수정이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수행 업무 중 “법률·수사 지원”이라는 표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상담 및 수사 지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정주요내용

가. 검사에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기관의 장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을 추가함(안 제

23조제2항제2호)

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수행 업무 중 “법률·수사 지원”을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으로 수정함(안 제  
46조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안 제46조제3항 중 “법률·수사 지원”을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으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생략)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② -----<br>-----<br>-----<br>-----<br>-----.<br>-----<br>-----<br>-----<br>-----<br>-----<br>-----. |
| 1. (생략)                                                                                                                        |                           | 1. (현행과 같음)                                                                                         |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u>성폭력피해 상담소</u>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                                                             |                           | 2. -----<br>-----<br>-----<br>----- <u>성폭력피해 상담소</u> , 같은 법 제12조의 <u>성폭력</u>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1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생략)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br>-----<br>-----<br>-----<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u>성폭력피해상담소</u> 및 같은 법 <u>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u>                                               | 2. -----<br>-----<br><u>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략)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                                                                                               | ② -----<br>-----                                                                      |

|                                                                                                                                                                                                                                                                         |                                                                                                                                                                                                                                                                                                                                                                                                                                     |
|-------------------------------------------------------------------------------------------------------------------------------------------------------------------------------------------------------------------------------------------------------------------------|-------------------------------------------------------------------------------------------------------------------------------------------------------------------------------------------------------------------------------------------------------------------------------------------------------------------------------------------------------------------------------------------------------------------------------------|
| <p>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 ~ 10. (생략)</p> <p>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u>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u></p> <p>12. ~ 16. (생략)</p> <p>③ (생략)</p> <p>제46조(상담시설)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 <p>-----</p> <p>-----</p> <p>-----</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p> <p>-----</p> <p>---<u>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p> <p>12. ~ 1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6조(상담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u>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p> |
|-------------------------------------------------------------------------------------------------------------------------------------------------------------------------------------------------------------------------------------------------------------------------|-------------------------------------------------------------------------------------------------------------------------------------------------------------------------------------------------------------------------------------------------------------------------------------------------------------------------------------------------------------------------------------------------------------------------------------|